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2월 22일 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5년 2월 17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31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1차위원회(1995년 3월 1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조례의 일부 기준을 경제·행정 규제완화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건축위원회의 기능에 11층이상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또는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심의사항을 추가함
- 건축지도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함
-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조경기준을 완화 건축면적을 500제곱미터 이하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로 변경
- 자동차관련 시설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장의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완화함.
- 옹벽 등 공작물예의 준용규정을 신설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유재한)

- 건축법이 '93. 8. 9 대통령령 제13953호와 동법시행령에 의거 법으로 위임된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여 개정하는 안으로서 기존조례의 규정보다 면적, 거리 등이 현행 보다 완화되어 제출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06
----------	-----

제출년월일 : 1995.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조례의 일부기준을 경제·행정 규제완화 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구민편의 및 건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건축위원회의 기능에 11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축계획 등에 관한 심의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 건축지도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함(안 제16조 제1항)
 -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 건축기사 또는 건축사보 자격소지자로서 3년이상 건축실무 경험이 있는 자
-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조경기준을 일부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모를 종전 건축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함(안 제17조 제2항)
-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위하여 예치하는 조경공사비 예약금액을 종전 공사비 산출내역서 금액의 3배에서 1.5배의 금액으로 완화하고, 건축주가 예정일까지 조경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건축주의 동의없이도 조경예약금으로 공사를 강제 집행토록 함(안 제19조)
-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후퇴선에 면하여 너비 1.5미터 이상의 조경시설 설치시 공장 및 창고 시설의 건축을 허용하고, 동물관련시설은 불허함(안 제28조 제1항)
- 미관지구내 대지안의 공지(3미터) 규정을 적

용함에 있어서 도로와 인접지역과의 고저차등으로 인하여 주간선도로와 지선도로가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주간선도로로부터 건축선을 3미터 후퇴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함(안 제30조 제1항)

- 미관지구안의 건축후퇴부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경계선에 면하여 대형수목·석재의자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가능하도록 함(안 제30조 제3항)
-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 교육연구시설중 교육원의 설치를 허용하고, 타용도의 시설을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및 용도변경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함(안 제37조)
- 자동차관련시설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장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완화하고(안 제42조 제2호, 안 제43조), 아파트의 적용대상 건축선중 폭원 15미터 미만인 도로에 면한 부분은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격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함. (안 제42조 제4호)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로 지정받은 자도 온돌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 제1항)
- 옹벽등 공작물에의 준용규정을 신설함(안 제52조의 2)

3. 개정근거 : 건축 58550-8127('94. 12. 1)호

4. 개정조례안 : 별 첨

5. 신·구조문 대비표 : 별 첨

6. 소요예산 : 필요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별 첨

8. 기타 참고사항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위원회 심의내용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3항중 “건축에 관한”을 “건축관련 분야에 관한”으로 한다.
- 제5조 제21호를 제22호로 하고 동조에 제13의 2호와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14호와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의 2. 제30조 단서 규정에 의한 건축선후퇴부분안의 조경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14.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구역지정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20. 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지하2층 이상 굴토시착공신고서에 첨부하는 흠막이판 구조도면 및 10미터 이상 굴토시의 흠막이판 구조도면에 대한 심의, 5미터 이상의 옹벽 및 절취사면의 설계도면에 대한 심의
21.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및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축계획 등에 관한 심의(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제외한다)
- 제16조 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사 자격소지자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 자격소지자로서 3년이상 건축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제17조 제2항 제2호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을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으로 한다.
- 제18조 제3항중 “그 폭을”을 “그 유효폭을”로 하고, 동조 제5항중 “옥상조경을 하는 경우”를 “옥상 또는 지하구조물상에 조경을 하는 경우”로 한다.
- 제19조 제1항중 “내역서 금액의 3배의 금액”을 “내역서 금액의 1.5배의 금액”으로 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건축주가 지정된 기간내에 조경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겸사권자가 건축주의 동의 없이도 조경예탁금으로 조경을 집행하고 정산토록 한다. 이 경우 조경집행예정일로부터 10일전까지 건축주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구청장은 영 제27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표와 같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회화·조각·조경시설물 등의 미술장식품을 당해 대지 또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 상 건 축 물	미술장식품설치비용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총 공사비의 1000분의 5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공사비의 1000분의 5

○제21조 제13호중 “총포판매소”를 삭제하고, 동조 제21호중 “청소년시설”을 “청소년 수련시설”로 한다.

○제28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중 “너비 3미터”를 “너비 1.5미터”로 하고, 제8호중 괄호안의 내용을 삭제한다.

○제29조중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삭제한다.

○제30조 제1항중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를 “미관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도로와 인접지역과의 고저차 등으로 인하여 주간선도로와 지선도로가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주간선도로로부터 3미터)”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부분에 대하여”를 “부분에는”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경계선에 면하여 대형교목(흉고직경 12센티미터, 수고 4미터 이상) 및 석재의자·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목당 5제곱미터의 면적을 제18조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다.

○제37조 제1항 제6호의 괄호안을 “교육원·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에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타용도의 시설을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용도변경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제2호 도표의 용도란중 “운수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운전·정비학원을 제외한다)”를 “운수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운전·정비학원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 제4호 도표의 아파트의 적용대상 건축선중 “모든 건축선”을 “모든 건축선(다만, 너비 15미터 미만인 도로에 면한 부분은 3미터)”로 한다.

○제43조 도표를 별첨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1항중 “상습침수구역으로서”를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습침수구역으로서”로 한다.

○제52조 제1항중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 법 제11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사이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조각시설
4. 지붕 및 벽이 없는 것으로서 물건 등을 들어 올리는 시설 등을 설치한 높이 6미터 이하의 타워크레인(호이스트)형태의 공작물

② 영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공작물은 미관지구·풍치지구·시설보호지구·공항지구안에서는 축조할 수 없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결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현행	개정(안)						
<p>1. (생략)</p> <p>2.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u>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u></p> <p>3. (생략)</p> <p>③(생략)</p> <p>제18조(식재등 조경기준)</p> <p>①~②(생략)</p> <p>③건축물의 후면·측면 또는 인접대지경계선 부근에 조경을 위한 식수등을 띠모양으로 하는 경우에는 <u>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u></p> <p>④(생략)</p> <p>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상조경을 하는 경우 수목을 식재하는 때에는 토심깊이를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미리 그 부분의 단면도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⑥~⑦(생략)</p> <p>제19조(조경공사비의 예탁)</p> <p>①영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사 1인 이상 또는 조경기사1급 2인 이상이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산출내역서 금액의 <u>3배의 금액으로 한다.</u></p> <p>②~③(생략)</p> <p>(신설)</p> <p>제20조(미술장식품의 설치)</p> <p>①구청장은 영 제2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당해 건축물 총공사비의 10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회화·조각·조형시설물등의 미술장식품을 당해 대지 또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미술장식품 설치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초과되는 당해 건축물 총공사비의 10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u>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u>.....</p> <p>3. (현행과 같음)</p> <p>③(현행과 같음)</p> <p>제18조(식재등 조경기준)</p> <p>①~②(현행과 같음)</p> <p>③ <u>그 유효폭을</u></p> <p>④(현행과 같음)</p> <p>⑤..... <u>옥상 또는 지하 구조물상에 조경을 하는 경우</u>.....</p> <p>⑥~⑦(현행과 같음)</p> <p>제19조(조경공사비의 예탁)</p> <p>① 산출내역서 <u>금액의 1.5배의</u></p> <p>②~③(현행과 같음)</p> <p>④(신설) 건축주가 지정된 기간내에 조경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가 건축주의 동의없이도 조경예탁금으로 조경을 집행하고 정산토록 한다. 이 경우 조경집행예정일로부터 10일전까지 건축주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0조(미술장식품의 설치)</p> <p>①구청장은 영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표와 같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회화·조각·조형시설물등의 미술장식품을 당해 대지 또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대상건축물</th> <th style="text-align: center;">미술장식품설치비용</th> </tr> </thead> <tbody> <tr> <td>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td> <td>당해 건축물 총공사비의 1000분의 5 이상</td> </tr> <tr> <td>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td> <td>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공사비의 1000분의 5이상</td> </tr> </tbody> </table>	대상건축물	미술장식품설치비용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당해 건축물 총공사비의 1000분의 5 이상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공사비의 1000분의 5이상
대상건축물	미술장식품설치비용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당해 건축물 총공사비의 1000분의 5 이상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공사비의 1000분의 5이상						

현행	개정(안)
<p>②~③(생략)</p> <p>제21조(용도제한) (생략)</p> <p>1. ~12. (생략)</p> <p>1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 <u>총포판매소</u>, 주유소, 저장탱크용량 10톤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제외한다.</p> <p>14~20. (생략)</p> <p>21. 청소년시설중 유스호텔</p> <p>제28조(용도제한)</p> <p>①(생략)</p> <p>1~4. (생략)</p> <p>5. 공장(인쇄·봉재·필름현상·자동차료처리장비 제조업·반도체 및 관련장치제조업·컴퓨터프로그램매체제조업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2배이하인 것으로 건축후퇴선에 면하여 <u>너비 3미터</u> 이상의 조경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6. 창고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다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건축후퇴선에 면하여 <u>너비3미터</u> 이상의 조경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7. (생략)</p> <p>8. 동물관련시설(<u>다만, 건축후퇴선에 면하여 너비 3미터 이상의 조경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9~11.(생략)</p> <p>②~④(생략)</p> <p>제29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영 제6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면적으로 한다. 다만,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안에 지정된 미관지구내의 기존 대지에 대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200제곱미터로 한다.</p> <p>1~5.(생략)</p> <p>제30조(대지안의 금지)</p> <p>①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u>미관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u>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의 도로너비가 1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생략)</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1조(용도제한) (현행과 같음)</p> <p>1~12. (현행과 같음)</p> <p>13.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 주유소, 저장탱크용량 10톤 이하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제외한다.)</p> <p>14~20. (현행과 같음)</p> <p>21. 청소년수련시설중 유스호텔</p> <p>제28조(용도제한)</p> <p>①(현행과 같음)</p> <p>1~4.(현행과 같음)</p> <p>5..... (.....)</p> <p>.....</p> <p>.....</p> <p>..... <u>너비 1.5미터</u></p> <p>.....)</p> <p>6..... (.....)</p> <p>.....</p> <p>..... <u>너비 1.5미터</u>.....</p> <p>.....)</p> <p>7. (현행과 같음)</p> <p>8. 동물관련시설</p> <p>9~11.(현행과 같음)</p> <p>②~④(현행과 같음)</p> <p>제29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p> <p>.....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p> <p>다음 각호의 면적으로 한다. 다만,.....</p> <p>.....</p> <p>.....</p> <p>1~5. (현행과 같음)</p> <p>제30조(대지안의 금지)</p> <p>①</p> <p>...<u>건축물은 미관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u></p> <p><u>터 (도로와 인접지역과의 고저차등으로 인하여</u></p> <p><u>주간선도로와 지선도로가 별도로 설치된 경우</u></p> <p><u>에는 주간선도로로부터 3미터) 이상을</u>.....</p> <p>.....</p> <p>②(현행과 같음)</p>

현행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퇴한 부분에 대하여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보행자 통행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담장·계단·주차장·화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신설)

제37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 ①(생략)
- 1~5.(생략)
- 6.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 7~18(생략)
- ②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신설)

제42조(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영 제81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 1. (생략)
- 2. 당해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건축물

용도	지역구분
창고시설	준공업지역
	기타지역
운수시설 및 자동차 관련 시설(운전·정비학원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기타지역

- 3. (생략)
- 4. 아파트와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다음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안)
 ③.....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단,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경계선에 면하여 대형교목(흉고직경 12센티미터, 수고 4미터 이상) 및 석재의자·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목당 5제곱미터의 면적을 제18조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다.

제37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 ①(현행과 같음)
- 1~5.(현행과 같음)
- 6. 교육연구시설(교육원·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 7~18(현행과 같음)
- ②.....
 다만, 타용도의 시설을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및 용도변경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2조(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 1. (현행과 같음)
- 2.

용도	지역구분
.....
.....
운수시설 및 자동차 관련 시설(운전·정비학원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

- 3. (현행과 같음)
- 4.

현행			개정(안)		
용도	띄어야 할 거리(미터)	적용 대상 건축선	용도	띄어야 할 거리(미터)	적용 대상 건축선
아파트	6	모든건축선	모든건축선(다만, 너비 15미터 미만인 도로에 면한 부분은 3미터)
관람집회·종교 시설, 장례식장	2	주출입구가 면한 도로에 한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입시계학원	3	주출입구가 면한 도로에 한한다

제43조(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영 제8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것과 같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표(생략) : 별첨

제47조(용도) ①상습침수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1층 이하의 부분을 주차장·기계설비실·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형상의 위치·건축물의 구조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생략)

②(생략)

제52조(온돌의 시공등)

①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이하 "온돌시공자"라 한다)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온돌의 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신설)

제43조(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도표(생략) : 별첨

제47조(용도) ①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습침수구역으로.....

1~6.(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52조(온돌의 시공등)

..... 취득한 자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특정 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온돌시공자"라 한다)가.....

②~③(현행과 같음)

제52조의 2(옹벽등 공작물예의 준용) ①영 제11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저장 시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

현행	개정(안)
	<p>음 각호의 공작물을 말한다.</p> <p>1. 제조시설 : 레미콘제조시설·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p> <p>2. 저장시설 : 사이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p> <p>3. 소각시설</p> <p>4. 지붕 및 벽이 없는 것으로서 물건등을 들어 올리는 시설등을 설치한 높이 6미터 이하의 타워크레인(호이스트)형태의 공작물</p> <p>②영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공작물은 미관지구·풍치지구·시설보호지구·공항지구안에서는 축조할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p> <p>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원		행		개		경 (단위: 미터)	
구	본	외벽 각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외벽 각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구	본	외벽 각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외벽 각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다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공해공장,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4.0이상(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공장은 2.0이상)	3.0이상(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공장은 1.5이상)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다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공해공장·액화석유가스충전소·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		4.0이상5(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공장은 2.0이상)	3.0이상(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공장은 1.5이상)
중심사업지역, 일반사업지역, 근린사업지역 및 유통사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다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판매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장례식장·종교시설		3.0 이상	2.0 이상	중심사업지역·일반사업지역·근린사업지역 및 유통사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다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		3.0 이상	2.0 이상
공 동 주 택	다세대 주택인 경우 3층또는 4세대 이상인 것	1.0 이상	1.0 이상	다 세 대 2층이하인 것		1.0이상	1.0 이상
		2.0 이상	1.0 이상	다 세 대 3층 이상인 것		2.0 이상	1.0 이상
		3.0 이상	2.0 이상	연 립 주 택		3.0 이상	2.0 이상
		6.0 이상	5.0 이상	아 파트		6.0 이상	5.0 이상
중심사업지역, 일반사업지역, 근린사업지역 및 유통사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다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판매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장례식장·종교시설		2.0 이상	1.0 이상	중심사업지역·일반사업지역·근린사업지역 및 유통사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다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판매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장례식장·종교시설		2.0 이상	1.0 이상
건축주거지역내 건축물		1.0 이상	0.5 이상	건축주거지역안의 건축물		1.0 이상	0.5 이상
일반·준주거지역내 건축물		0.5 이상	0.5 이상	일반·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		0.5 이상	0.5 이상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내 건축물		1.0 이상	0.5 이상	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		1.0 이상	0.5 이상
500㎡이상 창고, 자동차관련 시설(운전·정비화원을 제외한다)		3.0 이상	2.0 이상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다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자동차관련시설(운전·정비화원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3.0 이상	2.0 이상